

## 地方產業 保護政策의 經濟的 效果 分析\*

金明洙\*\* · 尹永善\*\*\*

### 논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건설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MRI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지방건설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제 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현행제도가 유지될 때와 폐지되었을 경우로 나누어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역간 교역계수가 달라질 것으로 민간건설부문의 교역계수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발주자 유형 및 공사규모로 세분하여 교역계수를 조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역보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제한입찰제도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 주제어: 지방산업 보호정책, 지역경제 파급효과, MRIO 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L5, R0

\* 본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e-mail: mskim@krihs.re.kr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부장, e-mail: ysyoon@cerik.re.kr

## I. 서 론

지역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주요 국가정책 방향 중 하나이다. 특히 지역의 문제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소 경쟁력이 뒤지더라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의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토착적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지방공단에 입지 하는 업체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건설산업의 보호정책에 대해서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방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경기를 선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이런 건설활동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역 고용에 기여하게 된다.

건설산업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대부분을 서울에 소재한 대형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다. 시공기술과 사업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 또는 수도권의 대형업체들과 비교해서 지방건설업체의 경쟁력은 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개발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건설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지방건설업체를 위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sup>1)</sup>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호정책은 입찰·계약 등 수주활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있다.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에 대해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 참여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공공공사에서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공동도급자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역업체들에게 건설공사 물량을 확보해 주자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건설) 공사는 공공발주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투자

1) 건설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3차 산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개별법에서 보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등에서 별도로 지방건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WTO에 가입한 이후 1994년부터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폐지가 거론되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들 제도들을 2002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건설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이들 제도가 좀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과 불공정한 제도로 자유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지방건설산업을 위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건설 보호제도들이 실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건설산업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지역제 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형은 윤영선·김명수(2000) 연구에서 구축된 서울, 경남지역, 그 외 기타지역으로 구성된 세 지역 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모형이다.

다수지역모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산업부문간 교역관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역교역계수(regional trade coefficients)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다수지역모형은 이 지역교역계수를 어떻게 추계하느냐에 따라 Isard 또는 IRIO 모형(Isard, 1951), Chenery-Moses 또는 MRIO 모형(Chenery, 1953; Moses, 1955), Leontief-Strout 모형(Theil, 1967; Polenske, 1970), Riefler-Tiebout 모형(Riefler and Tiebout, 1970)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적절한 모형의 선택은 획득 가능한 지역 교역에 관한 정보의 양과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MRIO 모형에서의 상품별, 원산지별 종착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교역 자료는 상대적으로 구득이 용이하므로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MRIO 모형을 이용하였다.<sup>2)</sup> 이돈재(1992), 윤영선·안정화(1993), 윤영선·김명

2) 위의 네 가지 다수지역모형들은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의 양과 가정이 각각 다르다. 요구되는 양이 적을수록 가정은 더 많이 요구되고, 모형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모형은 IRIO 모형이고, 그 다음으로는 Riefler-Tiebout 모형, MRIO 모형 순으로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중력모형(gravity model)이 가장 적은 자료가 요구된다. 지역간 교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별 원산지와 종착지에 관한 지역간 교역에 관한 실태 자료만 있고, 지역 내 산업부문으로의 이동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MRIO 모형이 적합하다. IRIO 모형은 지역간·산업부문간의 이동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여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현실적으로 IRIO 모형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2000) 도 모형 작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MRIO 모형을 이용한 바 있다.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지역경제파급효과와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파급효과를 비교하려면, 교역계수를 차별화해야 한다. 지역간 교역계수의 변화는 이들 제도가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민간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경쟁적인 건설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민간건설에서의 교역계수를 이용하였다. 아울러 발주자를 국가기관(중앙 정부), 지자체, 국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으로 구분하고, 공사금액을 구분하여 제도 폐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우선 II절에서는 지방건설산업을 위한 제도들을 소개하였다. III절에서는 이들 제도들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의 틀을 구축하였다. 그 다음 IV절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지방건설산업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I. 지방건설산업 보호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건설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지방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이 있다.<sup>3)</sup>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 제도는 모두 공공공사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이다. 민간공사에서는 사적 자유가 보장되므로 정부는 민간건설의 수주활동에 대해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있다.

###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제한입찰제도는 1980년 11월 지방중소업체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

3) 그 외에도 PQ(사전 입찰참가자격 심사)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대형업체에 대한 도급하한 설정,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자격자명부제도 등이 있다.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업체 및 중소업체의 보호차원에서 1990년에 도입된 초기에는 1억 원 이하의 일반공사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대상 금액이 여덟 차례에 걸쳐 상향조정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1981년 2억 원, 1982년 3억 원, 1986년 10억 원, 1991년 15억 원, 1992년 20억 원 미만 국가기관공사 및 50억 미만 지자체 공사로 그 대상 공사가 확대되었다. 그 후 1996년 국가기관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30억 원 미만(지자체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소재(광역지자체 기준)의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다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WTO가입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등으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 압력이 높았으나, 정부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축소시기를 유예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2000. 11. 17) 국가공사의 경우, 2001년부터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축소·시행키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유예하여 2002년부터 축소키로 결정한 바 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4년 6월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 도입의 명분은 대규모 공사수행기회가 부족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업체들에게 일정규모이하 공사에서는 반드시 지방업체를 공동도급자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업체에 수주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파트너인 대규모 건설업체와 함께 시공을 하면서 기술 등을 배우도록 하자는 의도였다. 실제적으로는 대규모 지역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을 다소나마 확보해 주자는 것이다.

지역공동의무도급제도에서는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가운데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 당해 지역에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규정된 공사규모는 78억 원 미만 국가기관공사, 235억 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범위는 국제입찰 대상 미만과 지역제한입찰제도 이상의 공사규모에 적용되고 있다. WTO 정부조달 협상체결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개방된 공공건설 부문은 중앙정부기관의 500만 SDR(58억 3천만 원) 이상 벌주공사와 지방자치

&lt;표 1&gt; 현행 지역산업 보호정책의 범위와 규모

(단위: 원)

구 분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국가기관 공사	30억 미만	30억 ~ 58.3억
지자체 공사	50억 미만	50억 ~ 174억
국가투자기관 공사	30억 미만	30억 ~ 174억

단체 및 공기업의 1,500만 SDR(174억 원) 이상 발주공사이다. 따라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국가기관 공사는 30억 원 이상 58억 3,000만 원 미만 공사, 광역지자체 공사는 50억 원 이상 174억 원 미만 공사, 정부투자기관 공사의 경우 30억 원 이상 174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지역공동도급제도는 도입 당시 WTO협정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 개방 이전인 199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건설업체의 요구로 현재까지 계속 유지 및 시행되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17일 국가공사에서는 2001년부터 대상공사를 78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축소·시행키로 한 것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III. 모형설정

#### 1. MRIO 모형구축<sup>4)</sup>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서울, 경남, 그 외 지역(기타지역으로 지칭)으로 구성된 MRIO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3개 지역을 각각 L, M, N으로 표시하기로 하자. 다지역 I-O 모형은 지역 내 기술계수행렬 A, 지역간 교역계수행렬 C, 지역의 부문별(산업별) 산출액 X, 지역 최종수요 Y, 지역부가가치 V로 구성된다. 세 지역 균형 방정식은 다음의 세 지역 거래표 행렬구조로부터 도출된다.

4) 세 지역 MRIO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영선·김명수(2000) 참고.

			중간수요			최종수요			산출액	
중간투입	L	$\hat{C}^{LL} A^L X^L$	$\hat{C}^{LM} A^M X^M$	$\hat{C}^{LN} A^N X^N$	$\hat{C}^{LL} Y^L$	$\hat{C}^{LM} Y^M$	$\hat{C}^{LN} Y^N$	$X^L$		
	M	$\hat{C}^{ML} A^L X^L$	$\hat{C}^{MM} A^M X^M$	$\hat{C}^{MN} A^N X^N$	$\hat{C}^{ML} Y^L$	$\hat{C}^{MM} Y^M$	$\hat{C}^{MN} Y^N$	$X^M$		
	N	$\hat{C}^{NL} A^L X^L$	$\hat{C}^{NM} A^M X^M$	$\hat{C}^{NN} A^N X^N$	$\hat{C}^{NL} Y^L$	$\hat{C}^{NM} Y^M$	$\hat{C}^{NN} Y^N$	$X^N$		
부가가치		$V^L$	$V^M$	$V^N$						
투입액		$X^L$	$X^M$	$X^N$						

세 부문(1, 2, 3부문)과 세 지역(L, M, N지역) 모형을 가정하면, 세 지역의 지역기술계수행렬과 세 지역 간의 교역계수행렬(모두 9개)을 작성할 수 있다. L지역의 지역기술계수행렬은 식 (1)의  $A^L$ 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L \rightarrow M$  지역간 교역계수행렬은 식 (2)와 같이 된다.<sup>5)</sup> 세 지역 간의 교역계수행렬은  $\hat{C}^{LL}, \hat{C}^{LM}, \hat{C}^{LN}, \hat{C}^{ML}, \hat{C}^{MM}, \hat{C}^{MN}, \hat{C}^{NL}, \hat{C}^{LM}, \hat{C}^{NN}$ 이 된다. 여기서  $\hat{C}^{LL}$ 은  $L \rightarrow L$  교역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이고,  $\hat{C}^{LM}$ 은  $L \rightarrow M$  교역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A^L = \begin{bmatrix} a_{11}^L & a_{12}^L & a_{13}^L \\ a_{21}^L & a_{22}^L & a_{23}^L \\ a_{31}^L & a_{32}^L & a_{33}^L \end{bmatrix} \quad (1)$$

$$\hat{C}^{LM} = \begin{bmatrix} C_1^{LM} & 0 & 0 \\ 0 & C_2^{LM} & 0 \\ 0 & 0 & C_3^{LM} \end{bmatrix} \quad (2)$$

5) 지역간 교역을 M지역에 대해서 표시하면 다음 식과 같다.  $i$ 상품의 지역간 교역 표의 열합(column sum)은 각 지역별로 여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받아들인  $i$ 상품의 총이입량을 의미한다.

$$T_i^M = Z_i^{1M} + Z_i^{2M} + \dots + Z_i^{LM} + \dots + Z_i^{PM}$$

여기서  $i$ 상품의 L지역과 M지역간의 지역간 교역계수(interregional trade coefficients)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_i^{LM} = \frac{Z_i^{LM}}{T_i^M}$$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역기술계수행렬과 교역계수행렬을 통하여 지역간 모형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지역간 투입계수행렬을 작성할 수 있다. 즉, 각 지역의 기술계수행렬에 각각 세 개씩의 교역계수행렬을 곱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간 투입계수행렬을 작성하게 된다. 예로서 L지역에 대해서는  $\hat{C}^{LL}A^L$ ,  $\hat{C}^{ML}A^L$ ,  $\hat{C}^{NL}A^L$ 의 세 개의 지역간 투입계수행렬이 작성된다. 마찬가지로 M지역에 대해서는  $\hat{C}^{LM}A^M$ ,  $\hat{C}^{MM}A^M$ ,  $\hat{C}^{NM}A^M$  그리고 N지역에 대해서는  $\hat{C}^{LN}A^N$ ,  $\hat{C}^{MN}A^N$ ,  $\hat{C}^{NN}A^N$ 의 지역간 투입계수행렬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세 개씩 모두 9개의 지역간 교역계수행렬이 작성된다.  $\hat{C}^{ML}A^L$ 의 행렬식을 표시하면 다음 식 (3)과 같이 된다.

$$\hat{C}^{ML}A^L = \begin{bmatrix} C_1^{ML} & 0 & 0 \\ 0 & C_2^{ML} & 0 \\ 0 & 0 & C_3^{ML} \end{bmatrix} \cdot \begin{bmatrix} a_{11}^L & a_{12}^L & a_{13}^L \\ a_{21}^L & a_{22}^L & a_{23}^L \\ a_{31}^L & a_{32}^L & a_{33}^L \end{bmatrix} = \begin{bmatrix} C_1^{ML}a_{11}^L & C_1^{ML}a_{12}^L & C_1^{ML}a_{13}^L \\ C_2^{ML}a_{21}^L & C_2^{ML}a_{22}^L & C_2^{ML}a_{23}^L \\ C_3^{ML}a_{31}^L & C_3^{ML}a_{32}^L & C_3^{ML}a_{33}^L \end{bmatrix} \quad (3)$$

여기서  $\hat{C}^{ML}A^L$ 은 M지역→L지역의 지역간 투입계수행렬로서 IRIO 모형에서 구하고자 하는  $A^{ML}$ 을 대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A^{LL}$ 을 대체하는  $\hat{C}^{LL}A^L$ 과  $A^{NL}$ 을 대체하는  $\hat{C}^{NL}A^L$ 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MRIO 모형에서 지역간 교역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단일지역모형에서 지역공급비율을 사용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가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즉,  $\hat{C}^{LM}A^M$ ,  $\hat{C}^{MM}A^M$ ,  $\hat{C}^{NM}A^M$ 으로 각각 배분된다.

이상에서 세 지역간 모형의 균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I - \hat{C}^{LL}A^L)X^L - \hat{C}^{LM}A^M X^M - \hat{C}^{LN}A^N X^N \\ &= \hat{C}^{LL}Y^L + \hat{C}^{LM}Y^M + \hat{C}^{LN}Y^N - \hat{C}^{ML}A^L X^L + (I - \hat{C}^{MM}A^M)X^M - \hat{C}^{MN}A^N X^N \\ &= \hat{C}^{ML}Y^L + \hat{C}^{MM}Y^M + \hat{C}^{MN}Y^N - \hat{C}^{NL}A^L X^L - \hat{C}^{NM}A^M X^M + (I - \hat{C}^{NN}A^N)X^N \end{aligned}$$

6) 즉, L지역 각 부문에 대한 M지역 재화의 투입은 모든 부문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M지역 재화의 투입 역시 L지역 모든 부문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입 패턴은 최종 수요 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hat{C}^{NL} Y^L + \hat{C}^{NM} Y^M + \hat{C}^{NN} Y^N$$

그리고, 이들을 행렬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 \begin{bmatrix} A^L & 0 & 0 \\ 0 & A^M & 0 \\ 0 & 0 & A^N \end{bmatrix}, \quad C = \begin{bmatrix} \hat{C}^{LL} & \hat{C}^{LM} & \hat{C}^{LN} \\ \hat{C}^{ML} & \hat{C}^{MM} & \hat{C}^{MN} \\ \hat{C}^{NL} & \hat{C}^{NM} & \hat{C}^{NN} \end{bmatrix}, \quad X = \begin{bmatrix} X^L \\ X^M \\ X^N \end{bmatrix}, \quad Y = \begin{bmatrix} Y^L \\ Y^M \\ Y^N \end{bmatrix}$$

$$(I - CA) X = CY \quad (4)$$

이 행렬식으로부터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역행렬계수가 도출된다.

$$X = (I - CA)^{-1} CY$$

## 2. 지방건설산업 보호정책 효과분석의 틀

위 모형에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같은 지방건설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실시되면, C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들 보호제도들의 시행은 경남지역 공공 건설 물량의 지역별 업체 수주 비중을 변화시키게 된다. 즉 지역간 교역계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중간 수요 배분을 위한 C와 최종 수요 배분을 위한 C값이 다르기 때문에 역행렬계수값을  $(I - CA)^{-1} C^*$ 로 표시하기로 한다.

당초 교역계수 C는  $\begin{bmatrix} \hat{C}^{LL} & \hat{C}^{LM} & \hat{C}^{LN} \\ \hat{C}^{ML} & \hat{C}^{MM} & \hat{C}^{MN} \\ \hat{C}^{NL} & \hat{C}^{NM} & \hat{C}^{NN} \end{bmatrix}$  와 같이 표현되는데 반해, 수정교역계

수  $C^*$ 는  $\begin{bmatrix} \hat{C}^{LL*} & \hat{C}^{LM} & \hat{C}^{LN} \\ \hat{C}^{ML*} & \hat{C}^{MM} & \hat{C}^{MN} \\ \hat{C}^{NL*} & \hat{C}^{NM} & \hat{C}^{NN} \end{bmatrix}$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들 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의 수정교역계수  $C^*$ 값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단 제도 폐지시 생각할 수 있는 교역계수는 민간건설에서의 교역계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보호제도는 공공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와는 무관한 민간공사의 교역계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민간건설부문에서는 어떠한 규제나 제약도 없이 시장 경쟁적으로 건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점은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공발주자에 따라 적용 대상공사 규모가 다르다는 점이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두 가지의 정책대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교역계수를 적절히 조정하였다. 먼저, 시나리오 I은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안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 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수주 관련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시나리오 II는 지역제한입찰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중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다.

개별 시나리오에서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정책 변수는 발주자에 따라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별에서는 발주자별 공사규모별로 수주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여  $C^*$ 값을 대체시켜야 한다.

#### IV.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 1. 현행 제도하에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MRIO 모형은 1995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것이고, 지역의 건설공사 규모별 발주량, 수주량, 지방건설업 보호대상 공사실적 등은 이 시기에 맞추어 1996년 통계치를 이용하였다.

1996년도에 경남지역에서 발주된 총액은 6조 510억 원이다. 그리고, 지역별 업체의 평균 수주 비중은 경남지역 업체가 36.6%, 서울지역 업체 42.9%, 기타 지역업체가 20.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공공기관이 발주한 물량의 지역별 업체의 수주실적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발주 기관별 경남지역 건설 물량의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

(단위: 십억 원, 괄호 안은 %)

구 분	경남지역 발주총액	경남지역 업체수주액	서울지역 업체수주액	기타지역 업체수주액
총 계	6,051(100.0)	2,216(36.6)	2,596(42.9)	1,239(20.5)
정부기관	436(100.0)	149(34.2)	122(28.0)	165(37.8)
지방자치단체	1,047(100.0)	746(71.3)	222(21.2)	79(7.5)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867(100.0)	261(30.1)	451(52.0)	155(17.9)
민 간	3,700(100.0)	1,060(28.6)	1,801(48.7)	839(22.7)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1997.

〈표 3〉 경남지역 전체 발주 공사의 지역별 파급효과

(단위: 십억 원)

구 분	경남지역 산업에 미친 효과	서울지역산업에 미친 효과	기타지역산업에 미친 효과	전국산업에 미친 효과
1. 농·림·수산품	17.3	0.7	76.0	94.0
2. 광산품	105.8	2.0	337.8	445.6
3. 음·식료품	9.4	14.3	47.0	70.7
4. 섬유·의복·가죽제품	3.3	6.0	31.2	40.5
5. 제재·종이제품	53.2	23.2	323.5	399.9
6. 화학제품	190.1	35.6	336.7	562.4
7. 석유·석탄제품	236.9	19.6	99.9	356.4
8. 비금속 광물제품	126.6	62.5	633.7	822.8
9. 제1차 금속제품	245.5	55.1	912.7	1,213.3
10. 조립금속제품	123.9	36.7	264.9	425.5
11. 일반기계제품	77.8	42.4	287.4	407.6
12. 전기·전자기기제품	43.5	63.7	317.8	425.0
13. 정밀기기제품	6.7	5.5	20.0	32.2
14. 수송기계제품	52.3	2.4	57.0	111.7
15. 기타제조제품	4.2	17.7	29.1	51.0
16. 전기·가스·수도	60.3	9.6	117.8	187.7
17. 건 설	2,222.5	2,654.2	1,263.9	6,140.6
18. 서비스	306.3	1,126.8	677.7	2,110.8
계	3,885.7	4,178.2	5,834.1	13,898.0

주: 1996년도 경남지역에서 발주된 공사 총액 6조 510억 원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임.

경남지역 발주공사의 각 지역별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남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모두 3조 8,8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산업에 미친 효과가 2조 2,225억 원으로 산업 중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에 3,063억 원의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계되었다.

둘째, 서울지역에 미친 효과는 4조 1,782억 원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건설업체에 미친 효과가 2조 6,542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업에 1조 1,268억 원의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건설 발주가 기타 지역에 미친 효과는 5조 8,341억 원으로 세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부문에 미친 효과는 1조 2,639억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세 지역 중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기타 지역의 산업들이 경남지역의 건설산업 생산을 위하여 간접 투입된 비중이 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1996년도 발주 물량이 국가 전체에 미친 효과는 13조 8,980 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 미친 효과는 6조 1,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2조 1,108억 원, 제1차 금속제품에 1조 2,133억 원, 비금속 광물제품에 8,228억 원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계되었다.

## 2. 시나리오별 보호정책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 (1) 시나리오 I: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동시 폐지

여기서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지방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폐지시키면 지역별 교역계수는 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 민간 공사의 지역별 수주 비중을 기존의 교역계수에 대체시켜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공공발주자별로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적용공사 규모가 다르므로, 각 발주자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즉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국가기관 및 국가투자기관에서 30억 미만 공사 발주량과 지자체공사의 50억 미만 공사 발주량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두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사에 민간공사의 교역계수를 적용하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분석이 가능하다. 지역보호제도가 모두 폐지된다면, 모든 공사는 민간 공사와

같이 시장경쟁적으로 수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민간 공사의 지역별 수주 비중은 경남 : 서울 : 기타 지역업체가 28.6% : 48.7% : 22.7%로 나타난다(부록 참조).

따라서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빌주 물량의 전부인 6조 510억 원을 민간공사의 지역별 수주 비중 자료가 적용된 C\*의 역행렬계수(I-CA)<sup>-1</sup>C\*를 적용하여 지역 보호제도가 모두 폐지된 경우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다.

이제는 지방건설 산업보호제도 폐지시의 파급효과를 현행 제도 하에서의 파급효과와 비교해 보자. 폐지시의 파급효과는 <표 5>의 첫 번째 항에 요약하였다.<sup>7)</sup>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지방건설 보호정책이 모두 폐지된다면, 경남지역 전체산업에 미친 생산유발효과는 현행 제도 시행시의 효과보다 -15.4%인 6,001억 원이 감소한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21.8% 감소한 4,85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나리오 I의 교역계수

건설수요액 (십억 원)	건설부문 교역계수			비 고
	경남→경남	서울→경남	기타지역→경남	
6,051	0.286	0.487	0.227	• 적용대상: 경남지역 빌주공사 전체 • 적용계수: 전체 민간공사의 지역별 수주 비중 적용

<표 5> 현행 지방건설 보호정책의 유지 및 완전 폐지시의 파급효과 비교

(단위: 십억 원, %)

구 분		경남지역	서울지역	기타지역	전국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폐지 (A)	전체산업	3,285.6	4,567.4	6,038.6	13,891.6
	건설산업	1,737.1	3,006.0	1,397.8	6,140.9
현행 제도 유지 (B)	전체산업	3,885.7	4,178.2	5,834.1	13,898.0
	건설산업	2,222.5	2,654.2	1,263.9	6,140.6
두 효과의 차이 (A-B)	전체산업	-600.1	+389.2	+204.5	-6.4
	건설산업	-485.4	+351.8	+133.9	0.3
증감효과 [(A-B)/B]	전체산업	-15.4%	+9.3%	+3.5%	-0.046%
	건설산업	-21.8%	+13.2%	+10.6%	0.0048%

7) 여기서는 <표 3>과 같은 각 산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생략하였다. 각 시나리오별로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는 미미하고, 정책적인 의미에서 특기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건설 보호제도가 폐지되면, 현행 제도 시행시의 효과보다 전체 산업에 있어서 9.1%가 증가한 3,8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역 건설산업은 13.2%가 증가한 3,518억 원의 생산 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건설 보호제도가 없어지면, 전체 산업에서 3.5%가 증가한 2,04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건설산업에서는 10.6%가 증가한 1,33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지방건설 보호정책이 폐지되었을 경우 국가 전체적인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자. 이는 각 지역별 파급효과의 합으로 나타나는 전국효과를 통해 비교·분석 가능하다. 지방건설 보호정책을 폐지하게 되면, 전체산업에서 64억 원 규모의 파급효과 감소가 초래되고 건설산업에서는 오히려 3억 원 정도의 파급효과 증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지방건설 보호제도 폐지에 따른 국민경제 전체의 증감효과는 -0.046%와 0.00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시나리오 II: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폐지

여기서는 지역제한입찰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로 발주되었던 공공공사의 지역별 수주 비중이 규제가 없는 민간 공사의 수주 패턴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각 공공공사 유형별로 지역제한입찰제도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해당 규모 공사의 민간 공사 지역별 수주 비중 자료를 교역계수로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 즉, 국가기관과 국가투자기관 공사의 30억 원 미만과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기관의 해당 규모 공사의 지역별 수주 비중을 적용하였고, 국가기관 공사와 국가투자기관의 30억 원 이상 공사는 민간 발주 공사의 30억 원 이상 수주 비중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50억 원 이상 공사는 민간 공사의 50억 원 이상 수주 비중을 적용하였고, 민간공사 전부에 대해서는 현행 민간 수주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표 6〉 시나리오 II의 교역계수

건 설 수요액 (십억 원)	건설부문 교역계수			비 고
	경남→경남	서울→경남	기타 지역→경남	
186	0.544	0.173	0.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30억 원 미만의 국가기관 공사</li> <li>적용계수: 30억 원 미만의 국가기관 공사 지역별 수주 비중</li> </ul>
827	0.809	0.126	0.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50억 원 미만의 지방자치 단체 공사</li> <li>적용계수: 50억 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별 수주 비중</li> </ul>
208	0.501	0.213	0.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30억 원 미만 국가투자기관 공사</li> <li>적용계수: 30억 원 미만 국가투자기관공사 지역별 수주 비중</li> </ul>
3,700	0.286	0.487	0.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민간공사 전부</li> <li>적용계수: 전체 민간공사의 지역별 수주 비중</li> </ul>
910	0.209	0.589	0.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30억 원 이상의 국가기관과 국 가투자기관 공사</li> <li>적용계수: 30억 원 이상 민간공사의 지역 별 수주 비중</li> </ul>
221	0.189	0.610	0.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50억 원 이상의 지자체 공사</li> <li>적용계수: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 지역 별 수주 비중</li> </ul>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유지하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의 과급효과를 현행 제도하에서의 과급효과와 비교해 보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현행 유지할 때의 효과보다 경남지역에서 62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를 가져온다. 이는 현행 제도시의 효과보다 약 1.6%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경남 지역의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적용시보다 2.3%가 줄어든 50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반면에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산업에 있어서 현행 제도시보다 1.6% 증가한 660억 원의 생산유발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서울지역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2.2%가 증가한 577억 원의 생산증대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마지막

〈표 7〉 현행 제도 유지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폐지시의 파급효과 비교

(단위: 십억 원, %)

구 분		경남지역	서울지역	기타지역	전국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폐지 (A)	전체산업	3,823.1	4,244.2	5,832.0	13,899.3
	건설산업	2,171.8	2,711.9	1,258.0	6,141.7
현행 제도의 효과(B)	전체산업	3,885.7	4,178.2	5,834.1	13,898
	건설산업	2,222.5	2,654.2	1,263.9	6,140.6
두 효과의 차이(A-B)	전체산업	-62.6	+66.0	-2.1	1.3
	건설산업	-50.7	+57.7	-5.9	1.1
증감효과[(A-B)/B]	전체산업	-1.6%	+1.6%	0.0%	0.0093%
	건설산업	-2.3%	+2.2%	-0.5%	0.017%

으로,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시나리오Ⅱ 선택시 전체 산업에 주는 효과는 거의 미미한 21억 원의 생산유발 감소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타지역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0.5%가 감소한 59억 원의 생산유발 감소효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지역의무공동동급 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 국가 전체적인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전체산업에서 16억 원 규모의 파급효과 증대가, 건설산업에서는 11억 원 정도의 파급효과 증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지방건설 보호제도 폐지에 따른 국민경제 전체의 증감효과는 0.0093%와 0.017%로 아주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분석결과 종합 및 비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건설산업 보호정책이 모두 폐지되면, 경남지역에서는 전체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현행 제도 하에서 보다 15.4% 및 21.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기타지역은 유발효과가 증가했으며, 서울지역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폐지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전국효과는 전체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각각 -0.046%, 0.0048%로 나타나 그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폐지되면, 경남지역에서는 전체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현행 제도 하에서 보다 1.6% 및 2.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기타지역의 유발효과는 지방건설 보호제도가 모두 폐지되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폐지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전국효과는 전체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각각 0.0093%, 0.017%로 나타나 첫 번째 시나리오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지방건설 보호제도는 경제전체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고, 형평성 개별 지역(서울, 경남, 기타권)에 미치는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제도들은 지역산업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보여진다. 아울러 지역제한입찰제도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보다 지역경제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건설산업을 위한 정책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이 된 지방건설 보호제도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 경남지역, 그 외 기타지역으로 구성된 세 지역 MRIO 모형을 구축하고, 현행 제도의 유지 및 폐지시의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지역간 교역계수를 차별화해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지역경제파급효과와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파급효과를 비교하였다. 보호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 지역간 교역계수의 변화는 민간건설부문의 교역계수를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제도가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민간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경쟁적인 건설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없애는 경우에는 경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전체산업에서 약 15% 정도라는 적지 않은 지역생산유발효과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경남지역 건설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도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폐지되면, 경남지역에서는 전체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현행 제도하에서 보다 1.6% 및 2.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폐지시키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폐지할 경우 모두 국민경제 차원에서 전체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틀 속에서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즉 활성화와 차원에서 볼 때 최소한의 지방 건설업 보호정책의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 참고문헌

1.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각년도
2. 산업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한국산업개발연구원, 「신공업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1995.
3. 윤영선·안정화, 「건설활동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지역산업연관분석I」, 국토개발연구원, 1993.
4. 윤영선·김명수, "세지역 MRIO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 연관 분석,"『경제학 연구』, 제48집 제2호, 2000.
5. 이돈재, 「MRIO모형을 이용한 신도시개발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6. Batten, D. F., "The Interregional Linkages between National and Regional Input-Output Model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 7, No. 1, May 1982, pp. 53~67.
7. Chenery, H. B., "Regional Analysis," H. B. Chenery, P. G. Clark, and V. Cao-Pinna, eds., *The Structure and Growth of the Italian Economy*, Rome: U.S. Mutual Security Agency, 1953, pp. 158~171.
8. Isard, W., "Interregional and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A Model for a Space Econom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3, 1951, pp. 318~328.
9. Jensen, R. C., "Construction and Use of Regional Input-Output Models: Progres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 13, Nos. 1&2, 1990, pp. 9~25.
10. McGregor, P. G., et al., "A Long-Run Interpretation of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36, No. 3, 1996, pp. 479~501.
11. Moses, L., "The Stability of Interregional Trading Patterns and Input-Output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955, pp. 803~832.

12. Polenske, K. R., "An Empirical Test of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s : Estimation of 1963 Japanese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0, No. 2, May 1970, pp. 76~82.
13. Rey, S. J., "Integrating Regional Econometric and Input-Output Models: an Evaluation of Embedding Strateg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9, 1997, pp. 1057~1062.
14. Riefler, R. F. and C. N. Tiebout, "Interregional Input-Output: An Empirical California - Washington Model,"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0, Nov. 1970, pp. 135~152.
15. Theil, H., *Economics and Information Theory*, New York: American Elsevier, 1967.
16. West, G. R., "Regional Trade Estimation: A Hybrid Approach,"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 11, Nos. 1&2, 1990, pp. 103~118.

## &lt;부록&gt;

## 규모별로 본 경남지역 발주기관별 지역업체 수주 비중(1996)

(단위: %)

## a. 경남지역 전체 공사의 지역별 업체 수주 비중

구분	30억 미만	30~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전체공사
경남	62.2	44.4	27.5	17.6	36.6
서울	16.6	36.3	53.4	61.8	42.9
기타	21.2	19.3	19.1	20.6	20.5

## b. 경남지역 정부기관 공사의 지역별 업체 수주 비중

구분	30억미만	30~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전체공사
경남	54.4	41.2	18.8	0	34.2
서울	17.3	33.9	42.9	33	28.0
기타	28.3	24.9	38.3	67	37.8

## c.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별 업체 수주 비중

구분	30억 미만	30~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전체공사
경남	85.8	52.1	46.3	0	71.3
서울	8.3	38.0	38.0	100	21.2
기타	5.9	9.9	15.7	0	7.5

## d. 경남지역 정부투자기관 공사의 지역별 업체 수주 비중

구분	30억 미만	30~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전체공사
경남	50.2	42.2	5.3	24.2	30.1
서울	21.3	36.9	72.5	64.0	52.0
기타	28.5	20.9	22.2	11.8	17.9

## e. 경남지역 민간공사의 지역별 업체 수주 비중

구분	30억 미만	30~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전체공사
경남	49.5	42.4	27.1	17.6	28.6
서울	21.3	36.0	56.9	61.6	48.7
기타	29.2	21.6	16.0	20.8	22.7

##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Protection Policies for Local Industry

Myeong-Soo Kim\* · Young-Sun Yoon\*\*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rotection policies for local construction industry. To explain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protection policies, 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is used. We focus on whether protection policies are really needed for local construction industry and which policy is more importan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protection policies are significant and that 'Restricted Bidding for Local Contractor' is far more important than 'Obligatory Joint-Venture with Local Contractor'.

**Key Words:** protection policies for local contractor, regional economic effects, MRIO model

---

\*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Senior Research Fellow,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